

입법예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외식사업자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항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외식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22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우수 식재료 관련 조항을 개정 법률과 일치시키고,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안)(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2182('20.6.8.)호)에 따라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4조의 제목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을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변경(안 제14조)

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 중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가공 업체”, “우수 식재료 연구·개발 기관”,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를 “외식 식재료 공급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가공 업체”, “외식산업 관련 우수 식재료 연구·개발 기관”,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외식산업 관련 사업자단체”로 변경(안 제14조)

다. “우수 식재료”를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로 변경(안 제14조, 제15조, 제19조)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을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개정(안 별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을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가공 업체”를 “외식 식재료 공급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가공 업체”로 하고, 제14조제1항제5호 “우수 식재료 연구·개발 기관”을 “외식산업 관련 우수 식재료 연구·개발 기관”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제6호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를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외식산업 관련 사업자단체”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제2항제4호, 제3항, 제15조제3호 및 제19조제3항제6호 중 “우수 식재료”를 각각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후단 중 “한 날”을 “적발한 날”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가공 업체 5. <u>우수 식재료</u> 연구·개발 기관 6. <u>우수 식재료</u>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u>우수 식재료</u> 구매·판매사업 2. <u>우수 식재료</u> 단체급식 등 제공 사업 3. <u>우수 식재료</u>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의 <u>우수 식재료</u>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	제14조(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 ① ----- <u>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u> ----- -----. 1. ~ 3. (현행과 같음) 4. <u>외식 식재료 공급</u> ----- ----- 5. <u>외식산업 관련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u> ----- ----- 6. <u>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u> ----- ----- <u>외식산업 관련</u> ----- ② ----- ----- ----- ----- ----- ----- -----. 1. <u>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u> ----- ----- 2. <u>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u> ----- ----- 3. <u>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u> ----- 4. ----- <u>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u> ----- ----- ③ -----

항 외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은 개인형과 직영·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2. (생략)
3.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4. (생략)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 관련 업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한다.

1. ~ 5. (생략)
6.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④ ~ ⑥ (생략)

-----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

-----.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

-----.

1. 2. (현행과 같음)
3.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

4. (현행과 같음)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

-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2. (생략)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 적발한 날 -----
--.

나.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